

「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」 평가기준 일부 수정 안내

- 기 공표된(2021.02.25.) 지표 평가기준 중 일부 수정 -

1 지표번호 : A.3.2.4

<수정 배경>

- 지표명 : 폐활량 검사시 일회용품 사용
- 평가방법에 폐활량 검사시 사용한 일회용품은 일반의료폐기물로 폐기 처리 확인(일반의료폐기물 보관 박스 등)이 불가능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로 명시되어 있으나, 환경부 질의회시(신청 번호 1AA-1905-225572) 결과(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한 폐활량 검사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는다)로 동 내용 삭제

수정 전	수정 후
원내용/출장용 검사시 사용한 일회용품은 재사용 불가능하며, 일반의료폐기물로 폐기 처리 확인(일반의료폐기물 보관 박스 등)이 불가능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	원내용/출장용 검사시 사용한 일회용품은 재사용 불가능하며, 일반의료폐기물로 폐기 처리 확인(일반의료폐기물 보관 박스 등)이 불가능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

2 지표번호 : A.3.2.6 ~ 7

<수정 배경>

- 지표명 : 청력 검사실 및 부스, 청력 검사기 보정점검
- A.3.2.6(청력 검사실 및 부스) 지표 평가방법에
 - ① ※ 출장 청력검사의 경우 출장용 청력검사실 포함하여 배경소음 측정(년1회 이상)
 - ② * '23년 평가기준 변경(안) : 배경소음 측정은 ISO 기준에 따라 년4회 실시(출장검진 포함)으로 명시되어 있으나, ①은 청력정도관리 기준에 따라 삭제하고 ②는 청력검사실 배경소음이 아닌 청력검사기 음향보정점검 내용으로 A.3.2.7(청력 검사기 보정점검)지표 평가내용에 수정 이동

지표번호	수정 전	수정 후
A.3.2.6	· 출장 청력검사의 경우 ~ 배경소음 측정(년1회 이상) · '23년 평가기준 변경(안) : ~ 년4회 실시(출장검진 포함)	삭제
A.3.2.7	-	· 평가방법 최하단에 '23년 평가기준 변경(안) : 청력검사기 음향보정점검은 ISO 기준에 따라 분기당 1회 이상 실시(출장검진 포함)시 배점이 아닌 가점으로 평가예정